소송 등의 제기·신청

1. 사건의 명칭	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
2. 원고 · 신청인	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
3. 청구내용	원고 스카이더블유는 피고 칸서스인베스트먼트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2005. 9. 28 피고가 메디슨 주식을 양도·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·협조하는 대가로 일정 시기가 지난 후 피고가 보유중인 메디슨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 할 수 있는 권리(콜옵션)를 갖는다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도 전인 2010. 12. 14 보유중인 메디슨 주식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투자이익 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한 메디슨 주식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라는 소를 제기함.
4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5. 향후대책	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.
6. 제기 · 신청일자	2016년 05월 26 일
7. 확인일자	2016년 06월 03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본 건은 원고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.